

교원임용추천위원회 내규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원임용추천위원회 내규

- 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교원임용추천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과 5인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교무처장,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전임교원을 임명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제3조 (위원장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 (기능)** ① 위원회는 재임용 및 승진 대상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대상교원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.
1. 정량평가(업적평가) 결과
 2. 학부(과)정성평가 결과
 3. 단과대학 임용 상신에 관한 사항
 4. 기타 교원 임용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5조 (위원회 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 (제출)**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결과와 정성평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- 제7조 (회의주관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- ②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- 제8조 (비밀유지)** 위원회 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의 시행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